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제2차 예비·신규 인증 공고(안)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6.4.)에 따라 2025년 신규·예비 인증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 공고기간 : 7.28.(월)~9.26.(금) (※공고 일정, 추진절차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유형

유형구분		내용	비고
1유형(기존유형)	1×2 형	제조가공 형태	예비/신규 인증
	1×3 형	원물-체험-관광 형태	
	1×2×3 형	제조가공/원물-체험-관광 형태	
2유형(신설유형)	1×2×3 형	농산물 외 농촌자원 활용	예비 인증 (신규 인증×)

□ 유형별 인증 추진절차

1유형 (기존 유형)	신청	1차 심사	적격성 검토	최종 승인
	사·도 지원센터 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			
2유형 (신설 유형)	발굴 및 추천	1차 심사	2차 심사	최종 승인
	사·도 지원센터 적격자 추천 (~'25.5.15)			

□ 공고 관련 추진절차

진행	①예비·신규 인증 안내	②컨설팅지원	③인증 접수	④서면·현장실사	⑤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
일정	7.28.(월)~9.26.(금)	7월~9월	9.26.(금) 16:00 마감	10.13.(월)~17(금)	11월~12월
내용	예비·신규 절차·접수·심사 기준 등 안내	예비·신규 인증 관련 컨설팅 2회 무료	인증 심사비 *자부담입금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현장실사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

□ 예비·신규 인증 자격요건(1유형 기존유형 / 2유형 신설유형)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에 소재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1유형 (기존유형)에 한함 *2유형 (신설유형)의 경우 자격 및 실적 증빙 필요	농촌융복합형태 여부 :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 가능 여부 -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단, 주원료의 품목 특성 상 재배지역이 한정된 경우 사·도 내 조달이 불가능함을 증빙 (「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결과 등) 시, 지역산 의무 사용비율(50%) 적용 예외 가능 * 농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품(과일농축액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공품 내 지역산 농산물이 50% 이상 사용되었음을 증빙 시, 인정 가능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생산품 품목 기재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이 가능한 제품만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주 생산품 변경 시 사업자 인증 변경 신청 필요 (2유형)신설인증의 경우, 주재료에 대한 증빙 제외. 단, 농촌과 연계된 사업성과 내 자격 및 실적 증빙 등 필수 - 농산물 외 농촌자원 활용으로 인한 신규 인증(2유형)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 정례화 및 본 인증 단계적 검토 * 지역농산물 브랜딩 및 온라인 유통, 농촌 빈집활용 위케이션 플랫폼 운영 등
사업성과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 소득 46백만원' 이상 - 매출액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1유형 기존유형의 예비인증 경우, 사업성과 요건(금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확인 1유형 기존유형의 신규인증 및 2유형 신설유형의 예비인증 경우, 사업성과 요건 충족 필(必)
기타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2차·3차산업 증빙서류	- 가공제품 ▶ (붙임18) 가공제품 현황 - 유통·판매 ▶ (붙임19) 유통·판매 현황 - 체험·서비스 ▶ (붙임20) 체험·서비스 현황

□ 신청유형별 요건 :

요건 및 신청구분	(1유형) 예비인증	(1유형) 신규인증	(2유형) 신설인증
요건1. 대상주체	○	○	○
요건2. 사업장 입지지역	○	○	○
요건3. 형태 및 주재료 지역 비율	○	○	△**
요건4. 사업성과	△*	○	○
△* : (1유형) 예비인증의 요건4. 사업성과의 경우, 최근2년 평균매출 46백만원 미만 신청가능 하나 사업자등록증 필(必) △** : (2유형) 신설인증의 요건3. 주원료형태의 경우, 농촌과 연계된 사업성과 내 자격 및 실적증빙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인증 신청서류 (www.제주6차산업.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 ▶ 인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지역농산물 증빙서류 등

*25년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신청 안내자료 참고

□ 인증신청 접수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직접제출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T.064-722-7917)

*서류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오니 방문접수 전, 반드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한 : 2025.9.26.(금) 16:00 도착에 한함

- 접 수 비 : 200,000원(입금증 증빙서류 첨부 필수)

단, 신규신청에 한함. (예비 인증 신청의 경우, 접수비 없음). 신청자는 자부담 금액을 해당 지원센터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납입을 통해 별도의 협약서(양도 동의서) 없이 지원센터에 비용 지급권을 양도한 것으로 갈음

□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신규·갱신 인증 설명회(예정)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일시 및 장소 : 2025.8.6.(수) 오후 2시,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3층(제주 서귀포시 서호남로 25)
-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에 관심 있는 농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
- 설명회 참석 신청 : 2025.7.29.(월) 09:00 ~ 8.3.(일) 23:59 (1주일간)

*대회의실 인원제한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30명 제한)

*설명회 참석신청은 제주농촌융복합산업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또는 QR코드로 신청

□ 비고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본인증 기간만료 등에 따른 미신청 업체는 1년간 신규인증에 접수불가 ex) (예비)인증기간 2024년 6월 1일 만료시, 2025년 6월2일 이후의 공고에 접수 가능

□ 문의처 :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화 : 064-722-7917 / 이메일 : stormand@jeju6th.kr / Fax 064-722-7919